

● 제315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348)

2022. 11. 2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348

I. 동의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안경위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2. 10. 17.

다. 회부일 : 2022. 10. 21.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구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구강 건강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나. 기존 위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4월 1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 재위탁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사무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수탁운영
- 위탁기간 : 2023. 4. 18. ~ 2028. 4. 17. (5년)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위탁사무
 - 장애인치과병원에 대한 비전과 발전계획 수립
 - 병원 및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치과진료
 - 장애인 공공구강보건의료 연계체계 구축
 - 치과진료분야 임상연구 및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추진 등

나. 소요예산 : 3,499,417천원 ('23년 예산 편성중)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추진 필요성
 -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전문성과 사명감이 필요한 구강 특화 병원으로, 장애인 구강 진료를 위해 숙련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지속적 위탁 운영이 필요함.

라. 심의결과 : 적정 (2022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나. 예산조치 : 2023년 예산 편성중 (3,499,417천원)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공공의료추진반 시립병원강화팀 이복경(☎ 2133-9244)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동의안의 제출 경위 및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의 민간위탁 계약기간('18. 4. 18.~'23. 4. 17.(5년¹⁾))이 만료('23.4.17.) 도래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함)」 제4조의3제1항2)에 의거 재위탁³⁾(공모)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⁴⁾에 따르면 “반드시 재위탁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경우”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75점 미만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 장애인치과 병원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점수가 68.1점에 해당하여 지침상 재위탁 공개모집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민간위탁 조례」 제6조⁵⁾ 및 「시립병원 설치 조례」 제10조⁶⁾에 따라 ‘중증 장애인 및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구강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설치·운영 중인 기관이며,
- 2005년 4월 서울시 치과의사회와 1차 위·수탁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6차 위·수탁 협약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재위탁(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과 7차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
- 1)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준용)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 이외에 병원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병원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4호(정의)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중 반드시 재위탁 공개모집 (재계약 배제) 해야하는 경우
①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75점 미만인 경우
 -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6)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 민간위탁 협약 연혁

차수	계약기간	수탁기관	비고
1차	'2005. 04. 18. ~ '2008. 04. 17.	서울시치과의사회	-
2차	'2008. 04. 18. ~ '2011. 04. 17.	특수법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공개모집
3차	'2011. 04. 18. ~ '2014. 04. 17.		재계약
4차	'2014. 04. 18. ~ '2015. 04. 17.		재계약
5차	'2015. 04. 18. ~ '2018. 04. 17.		재계약
6차	'2018. 04. 18. ~ '2023. 04. 17.		공개모집

○ 민간 위탁 시설 개요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207(홍익동 102번지)
- 시설규모 : 대지 878.1㎡, 건물 1,732.35㎡(지하1층, 지상4층) ※ 서울시 소유
- 병원 시설

층 별	용 도	면 적(㎡)
계	의료시설	1,732.35
지하 1층	세미나실, 의료정보실	336.44
지상 1층	환자대기실, 전신마취실	219.08
지상 2층	진료실, 흉부 및 구외촬영실	446.52
지상 3층	진료실, 연구실	447.46
지상 4층	연구실, 행정실, 옥상 녹지화공원	282.85

2 위탁 사무의 내용 및 2023년도 예산(안) 내역

- 시장이 재위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의 구체적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 치과병원에 대한 비전과 발전계획 수립
 - 병원 및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치과 진료
 - 장애인 공공구강보건의료 연계체계 구축
 - 기타 치과진료분야 임상연구 및 장애인 구강보건교육 사업 추진 등
- '23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 보조예산은 「민간위탁 조례」 제13조7)에 근거해 민간위탁금(약 33억원) 및 민간위탁 사업비(약 2억원)으로 총 약 3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 세부편성내역으로는 민간위탁 운영비 약 33억원 중 공공의료 손실보전 약 23억원, 이동치과진료 약 4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위탁 사업비 약 2억원 중 의료장비 도입 및 기능강화 약 7,000만원, 외벽방수 등 재시공 약 6,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붙임2 참조]

< 장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 보조예산 및 집행률 현황 >

(단위: 천원)

연번	예산과목	'23년 (예산안)	'22년 (9월말 기준)	'21년	'20년	'19년
0	보조예산 총액	3,499,417	3,071,372	2,891,795	2,739,308	3,359,053
1	민간위탁금 (운영비)	3,337,917	2,789,036	2,656,983	2,464,155	2,476,872
2	민간위탁 (사업비)	161,500	282,336	234,812	275,153	882,181
3	집행률	-	73%	100%	99%	99%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검토

- 「장애인복지법」 제9조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⁹⁾에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을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4조¹⁰⁾에 따르면 시장은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의 운영사무’는 첫째 비장애인의 구강구조와는 다른 장애인의 특수한 구강구조를 진료 대상으로 한다는 점, 둘째 전신마취 등의 전문적인 의료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 셋째 병원 내 특수 의료장비 배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공간 배치 및 장비 마련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및 조례상 민간위탁이 가능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시립병원 및 보건시설 운영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6) 「장애인 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9)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10)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운영성과

- 국립재활원의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2017년~2019년 3년 연속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흔한 질환 1위는 치은염과 치주질환으로 나타났다. [붙임1참조]
- 하지만, 이와 대비해 2017년~2019년 장애인의 구강검진 3년 평균 수검률은 21%로써 비장애인의 구강검진 3년 평균 수검률 31.1% 대비 약 10%p 낮게 나타남.
- 이러한 이유는 진료비 등의 경제적 부담,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 전문적인 진료와 교육을 수행할 의료진을 보유하고 마취시설 등 특수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의 부족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치료대상의 특수성’과 치과 진료·교육 및 마취 등에 있어 ‘고도화된 전문 의료지식이 필요한 사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수행에 있어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이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을 할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장애인 치과병원의 주요사업의 실적과 달성률을 보면, (4년 평균) 환자 치료 달성률은 78%이며 수익 달성률은 85%을 보임. 이는 코로나19확산으로 많은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높은 실적 달성률로 보임.

<’18년~’21년 장애인 치과병원의 주요사업 실적과 달성률>

연도	사업명	목표	실적	달성률(%)	
2018	장애인 치과치료	환자수(명)	28,319	22,824	80.6
		수익(천원)	4,608,073	4,188,111	90.9
2019	장애인 치과치료	환자수(명)	28,410	22,382	78.8
		수익(천원)	4,935,556	4,456,077	90.3
2020	장애인 치과치료	환자수(명)	28,978	20,048	69.2
		수익(천원)	5,382,915	4,018,539	74.7
2021	장애인 치과치료	환자수(명)	25,112	21,127	84.1
		수익(천원)	5,267,531	4,493,885	85.3

- 또한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의 민간위탁 운영성과를 보면 2018년~2020년(3년간) 평균 95점으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2019년(2년간) 서울특별시립병원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인정 받았음..

- 그러나 2020년~2021년 서울특별시립병원 성과평가에서는 2020년 69.5점, 2021년 68.1점으로 낮은 평가점수를 받았음.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평가부터 주요 평가지표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표로 바뀐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다만 그럼에도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11) 및 「시립병원 설치조례」 제22조12)에 따라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로 제출된 2021년 평가점수가 68.1점인 점은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13)상 반드시 재계약을 배제하고 재위탁(공모)를 해야하는 사유 (종합성과평가 결과 75점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성과평가 결과 요약
 - 서울특별시립병원평가 (※ 20~21년 성과평가의 경우, 평가지표가 코로나19 관련 지표로 변경됨)

연도	2018	2019	2020	2021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2022
결과	우수상	우수상	-	-	진행예정
총점	834.4 (1,000점 기준)	843.7 (1,000점 기준)	69.5 (100점 기준)	68.1 (100점 기준)	"
순위	1위/8개병원중	1위/8개병원중	-	-	"
수상내역	서울특별시장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	-	"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연도	2018	2019	2020	2021
결과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심사중
총점(100점)	96.0	97.4	92.5	"
수상내역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 1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12)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평가)① 시장은 병원의 공공성, 경영효율성,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해 연1회 병원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공공의료의 성장에 기여토록 한다.
- 1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中 반드시 재위탁 공개모집 (재계약 배제) 해야하는 경우 ①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75점 미만인 경우**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 「시립병원 설치조례」 제10조 및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사무로 재위탁(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 따라서, 향후 수탁기관 재위탁 공모 과정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 이 과정에서 현재 병원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신마취 치과 진료 시설, 장비, 의료진 부족과 그에 따른 장기간 대기(6개월)’ 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문 의 처

신현태 입법조사관 (02-2180-8145)

붙임1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자료 [출처: 22.4.20.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건강보건연구과 보도자료]

□ 장애인 다빈도 질환 순위 (*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보건연구과, 22. 4. 20. 보도자료)

2019년 장애인 및 비장애인 다빈도질환 20순위				
순위	장애인		비장애인	
	코드	질병명	코드	질병명
1	K05	치은염 및 치주질환	K05	치은염 및 치주질환
2	J20	급성 기관지염	J20	급성 기관지염
3	M54	등통증	M54	등통증
4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J30	혈관운동성 및 알러지성 비염
5	M17	무릎관절증	K02	치아우식
6	E11	2형 당뇨병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7	M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장애	J06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
8	K29	위염 및 십이지장염	K29	위염 및 십이지장염
9	K21	위-식도역류병	J03	급성 편도염
10	M48	기타 척추병증	M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장애
11	L23	알러지성 접촉피부염	L23	알러지성 접촉피부염
12	K04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H10	결막염
13	J30	혈관운동성 및 알러지성 비염	K21	위-식도역류병
14	K02	치아우식	J02	급성 인두염
15	M75	어깨병변	A09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16	J06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	J00	급성 비인두염[감기]
17	H10	결막염	K04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18	J00	급성 비인두염[감기]	J01	급성 부비동염
19	K08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20	M2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	J04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주) 등통증: 목, 허리통증 포함함
연부조직장애: '근육통, 신경통, 류마티스 등'을 포함함.

☞ ('17~'19년 다빈도질환 20순위) 3년간 장애인 다빈도질환 순위는 큰 변화 없이 1순위가 치은염 및 치주질환임. 비장애인 다빈도질환 1순위는 '17~'18년에 급성 기관지염이고, '19년에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임. 다만, 장애인의 경우, 장애 관련 질환과 만성질환이 전체 인구에 비해 상위 순위에 다수 분포

□ 장애인 및 비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 (*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보건연구과, 22. 4. 20. 보도자료)



붙임2 2023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 예산 (안)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민간위탁금	○ 공공의료 손실보전 1,901,600,000원 = 1,901,600천원	○ 공공의료 손실보전 2,291,582,000원 = 2,291,582천원
	○ 이동치과진료 335,624,000원 = 335,624천원	○ 이동치과진료 426,641,000원 = 426,641천원
	○ 치과치료비 지원 404,760,000원 = 404,760천원	○ 치과치료비 지원 445,236,000원 = 445,236천원
	○ 공공구강보건의료사업 35,710,000원 = 35,710천원	○ 공공구강보건의료사업 43,617,000원 = 43,617천원
	○ 건강돌봄 네트워크 39,792,000원 = 39,792천원	○ 건강돌봄 네트워크 49,504,000원 = 49,504천원
	○ EDR 시스템 유지보수 30,786,000원 = 30,786천원	○ EDR 시스템 유지보수 40,243,000원 = 40,243천원
	○ 콜백시스템 유지보수 40,764,000원 = 40,764천원	○ 콜백시스템 유지보수 41,094,000원 = 41,094천원
증감사유		
○ 코로나19 지속으로 공공의료손실보전 증액, 이동치과진료사업, 공공구강보건의료사업, 건강돌봄 네트워크등 인건비 상승분 및 사업비 반영		
민간위탁사업비	○ 의료장비 도입 및 기능강화 76,600,000원 = 76,600천원	○ 의료장비 도입 및 기능강화 66,000,000원 = 66,000천원
	○ 시스템 에어컨 교체공사 113,336,000 = 113,336천원	○ 외벽발수제도포 및 코킹 재시공 61,500,000원 = 61,500천원
	○ 승강기 교체공사 92,400,000 = 92,400천원	○ 감염예방을 위한 환기 유니트 설치 34,000,000원 = 34,000천원
증감사유		
○ 시스템 에어컨 교체공사 및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 종료 ○ 내용년수 10년 이상 장비중 일부교체, 장애인환자에게 꼭 필요한 전신마취기 교체, 감염예방을 위한 환기 유니트 설치, 안전점검 지적사항 반영하여 외벽 공사		